

공제가입증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공제계약자와 해당 공제약관에 의해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우: 760 - 709)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교리 496

안동과학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총장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의 내용이 약관과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 또는 각종 권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원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급여의 청구 및 계약서 사함을 변경하실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가 필요하오니 소중히 보관 하여 주십시오.
- 공제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갖추어 저희 안전원으로 청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① 청구서(안전원 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료비 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인단서, 입원치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연구주체의 장의 사고경위서 등

일반	공제가입기간	2021-04-14 00시 ~ 2022-04-13 24시		
	공제가입금액	유족급여 : 200 백만원 장해급여 : 200 백만원 요양급여 : 100 백만원 장의비 : 10 백만원 입원급여 : 5 만원		
	가입인원 수	2,377 명	총 공제료	1,931,660 원

계약자	계약자명	안동과학대학교 총장		학교 (기관)	학교 (기관)명	안동과학대학교
	연락 처	전화	054-851-3639		설립구분	사립
		팩스	054-852-9907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교리 496 안동과학대학교

공제가입내역

전문대학	대학생	간호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국방의료과
전문대학	대학생	물리치료과	전문대학	대학생	물리치료과학(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보건의료행정과	전문대학	대학생	뷰티아트과
전문대학	대학생	뷰티아트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사이버보안과
전문대학	대학생	사회복지과	전문대학	대학생	사회복지과(산업체)
전문대학	대학생	사회복지과(야간)	전문대학	대학생	사회복지학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산업보건관리과	전문대학	대학생	스포츠레저과
전문대학	대학생	유아교육과	전문대학	대학생	유아교육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축구과	전문대학	대학생	축구학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치위생과	전문대학	대학생	치위생학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항공보안과	전문대학	대학생	항공산업경영과
전문대학	대학생	건설정보과	전문대학	대학생	건설정보과(산업체)
전문대학	대학생	건설정보과(야간)	전문대학	대학생	건설정보학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미래자동차공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소방안전과
전문대학	대학생	식품영양과	전문대학	대학생	의료공학과
전문대학	대학생	의료공학과(심화)	전문대학	대학생	의료공학과(야간)
전문대학	대학생	의약품질분석과	전문대학	대학생	전기자동화과

※ 이 공제증은 본보통증명서로서, 공제가입기간 중 과공제자(연구합동종사자)의 인원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적회 안전원에 통지하시거나 직접 전신 접수 후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유로 본 공제증은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 이 공채종원은 또한종원으로서는, 공개가일기간 중 피공개자연구합동중사자의 인원의 증감되었을 때에는 적회 만결월에 통지하시기나
적회 전신 접속 후 조정하시어 하며, 그러한 사유로 본 공채종원을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1. 연구활동종사자 가입인원 변동에 따른 인원·명단 통보 및 자동담보에 관한 사항

1-1. 대학(원)생의 경우 정기적(매학기)으로 가입인원을 안전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보조)원의 경우 인원 변동 시 명단을 안전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2. 통보지체로 학적(명단)에 없는 연구활동종사자 사고자 발생 시

1-2-1. 대학(원)생은 학과별 전체인원을 가입한 학과에 한하여 추가 학적등록생의 경우 본 공제에 자동담보되며 휴학이나 졸업 등으로 학적에서 제외된 경우 담보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단 학과별 부분인원(명단)으로 가입 시 사고발생 전 제출된 명단에 한하여 자동 담보함.

1-2-2. 연구(보조)원 중 신규채용 된 인원의 경우 사고발생 전 제출된 명단에 한하여 자동담보하며 기존 인원과 변경되어 채용된 경우 총장·기관장 공문으로 증명 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1-3. 대학원 진학예정자(일시적 학적상실자)에 대한 보장기간 확대

1-3-1. 졸업 후 학적에서 제외된 연구활동종사자가 동일학교 진학 예정자로서 연구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안전원은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 전일까지 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보장합니다.

1-3-2. 다만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계약이 종료될 경우 안전원은 더이상 보장하지 않습니다.

1-3-3. 해당 대학원 진학예정자(일시적 학적상실자)에 대한 공제료 환급 또는 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안전원은 더이상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연구활동종사자 가입인원 변동에 따른 공제료 정산에 관한 사항

2-1. 대학생.대학원생.연구원.연구보조원 각각 인원의 10% 이하 증감이 있을 시에는 공제료를 정산하지 아니하며 10%를 초과한 경우 증감된 전체인원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2-2. 정산일은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하며 정산일 기준 공제가입 대상자 현황을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제료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 시작일 이전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이 지연될 경우 안전원은 공제료 입금일 이후부터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이 공제증권은 보험증권으로서, 공제가입기간 중 피공제자(연구활동종사자)의 인원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적회 안전원에 통보하시거나 직접 정산 절차를 요청하셔야 하며, 그러한 사유로 본 공제증권을 재발급하지 않습니다.